

〈별첨자료 (1)〉

2000년 법정 위싱턴 자문단회의 보고

일시: 1999. 11. 10-12

한미여론이
관심하는 12월 12일은
미국에 대해 선전하는
수업으로
2000. 11. 12

〈1차회의〉

* 일시: 1999. 11. 10

* 장소: 알렉산드리아 힐튼 호텔 로비

* 참석자: 티나 돌고플, 마쭈이 야요리, 윤정옥

1. 참고인은 각 나라를 대표해서 한시간씩 발언한다.
2. 돌고플 교수가 하루 7시간 이상 법정을 열수 없으므로 3일동안 법정 개정시간은 총 21시간으로 하기로 하다.
3. 기소 요지발표에 필요한 시간은 각 나라가 90분씩 하기로 하다. (검사진술 30분, 피해자 증언 30분 (2명), 조사자 진술 30분)
4. 돌고플 교수가 일왕을 피고로 만드는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다.
5. 마쭈이 야요리는 올해 여름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온 일본 전 군인의 의식조사를 한 결과 2/3가 일본이 성노예 피해자에게 사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음을 보고하다.

〈2차회의〉

* 일시: 1999. 11. 11

* 장소: 호텔 로비

* 참석: 티나 돌고플, 인다이 사호르, 마쭈이 야요리, 윤정옥

1. 윤정옥 교수가 일왕을 전범자, 인권유린자의 명단에 넣어 피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돌고플 교수는 반대하지 않다.
2. 고소국을 7개국으로 하기로 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북조선, 한국, 일본)
3.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는 연락이 전혀 없어서 참가하는 것이 무리이며, 말레이시아는 일본의 나카하라 미찌코 교수가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법정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은 전 일본군의관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
5. 검사장으로 지난 10월 국제실행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아스마(검사장, 파키스탄)와 레베카(검사장보, 캐나다) 2인으로 검사장단을 구성한다.
6. 검사는 각국의 고소문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읽기로 하다. 주최측에서는 참가자가 법정에 들어올 때 고소문을 나눠주고 법정이 열리기 전 고소문을 읽게 한다. 미리 읽으라는 문구를 준비된 고소문 상단에 인쇄한다.

(명기하러 사담 했을 뿐임)

〈3차 회의〉

* 일시: 1999. 11. 12

* 장소: 호텔 로비

* 참석: 티나 돌고플, 인다이 사호르, 마쭈이 야요리, 쯔지이 미호, 살롯 번치, 플로텐 스 버터구와, 윤정옥

1. 고소하는 일은 각국이 연습을 해서 각 나라별 90분을 넘지않게 한다. 도쿄에서 7개국이 모여 총 예행연습을 한다.

〈4차 회의〉

* 일시: 1999. 11. 12

* 장소: 호텔 식당에서

* 참석: 티나 돌고플, 인다이 사호르, 마쑤이 야요리, 살롯 번치, 플로렌스 버터구와, 룬다 코플론, 윤정옥

1. 살롯 번치는 법정은 포럼 형태로 생각하고 검사장팀을 구성하여 한나라에서 검사 한 명씩 구성하고 판사는 3사람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에 윤정옥은 이 법정의 개최 목적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인권을 회복하는데 있으므로 가장 강력하고 권위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7명 판사 후보 전원에게 초대장을 내고, 최소한 5명의 판사들이 수락하도록 노력한다.

2. 판사, 검사, 전문가 증인에게 정식초대장을 발송하되, 전자메일로 초대장을 먼저 보낸다.

<5차 회의>

* 일시: 1999. 11. 12

* 장소: 윤정옥 선생님 방

* 참석:

1. 법정을 구성하는 모든 판사와 전문가 증인들에게 이 법정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리는 설명서를 준비해서 미리 보낸다. 2000년 법정이 끝난 후에 공청회가 계속됨을 알려 계속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설명서에 2000년 법정이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선언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다.

3. 설명서와 초대장 발송은 비밀로 한다.

4. 초대장은 인다이 사호르가 초안을 잡아 11월 21일까지 윤정옥과 마쑤이 야요리가 검토한 후 인다이에게 보낸다. 인다이는 11월 28일까지 살롯 번치에게 보내 최종 완성안을 갖추도록 한다. 완성된 초대장은 인다이가 판검사단, 전문가증인, 돌고플, 살롯 번치, 마쑤이, 윤정옥에게 12월7일까지 보낸다. (인다이 (11.21) -> 윤정옥, 마쑤이 -> 인다이 (11.28) -> 살롯 번치 -> 인다이 -> 발송 (12.8))

5. 레터 헤드와 로고는 일본이 책임진다.

〈별첨자료 (2)-1〉

2000년법정 판검사단 및 전문가증인 (Expert Witness) 명단 (안) *검정 자살 등이 있음*

【검사단】

▲ 검사단: 2인1조로 부장 검사단을 형성하고, 총 9명이다.

▲ 검사장단: ① Ms. Asma Jahangir (파키스탄, 검사장), ② Ms. 레베카 (캐나다, 검사장보)

▲ 각국검사단:

- ③ 한국: 박원순 변호사
- ④ 일본: 티나 돌고폴 교수
- ⑤ 필리핀: Merlin Magallona
- ⑥ 북한:
- ⑦ 대만:
- ⑧ 중국:
- ⑨ 말레이시아:

【관사단】

▲ 총 7명

- ① Ms. Danielle Mitterand (전 미테랑 대통령 부인, 부장판사, Human Rights Summit 의장),
- ② Ms. Louise Joinat (미국 국적 프랑스 판사, impunity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 ③ Ms. Gracia Machal (모잠비크 어린이회 회장, 넬슨 만델라 부인)
- ④ Ms. Isabel Allende (칠레, 국회의원, 인권운동가, 전 칠레 대통령 아헨데의 딸, 독재자 피노체트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인권과 사회정의 회복을 위해 운동)
- ⑤ Ms. Pierre Sane (세네갈, 국제앰네스티 회장)
- ⑥ Ms. Vittit Matterborn (태국, 출라롱크대 교수, 어린이 매매춘과 학대받는 어린이 보호운동, 전 어린이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 ⑦ Ms. Gabriela McDonald

【전문가증인】 *간접증인?*

▲ 총 4명

- ① Ms. Rhadhika Coomaraswamy (스리랑카, 여성에 대한 폭력 유엔특별보고관)
- ② Ms. Patricia Selder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고와 르완다 전범재판시 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검사보)
- ③ Ms. Judith Herman (미국 하버드의대, 트라우마 전공)
- ④ Ms. 아키라 후지와라 (藤原 아키라, 일본역사 및 일본제국군대사 전공)

【원고단】

▲ 14명: 각국별 2명×7개국

- ① 한국: 2명, ② 북한: 2명, ③ 대만: 2명, ④ 중국: 2명, ⑤ 필리핀: 2명, ⑥ 말레이시아: 2명, ⑦ 일본: 2명

〈별첨자료 (2)-2〉

2000년 법정의 개요

- * 총 일 정: 2000. 7-11 (5일간)
- * 법정일시: 2000. 8-10 (2박3일)
- * 공식언어: 영어, 일어, 한국어 (기타 필요한 언어는 컷속말 통역)
- * 장소: 일본 동경 시내 구단자카 호텔
- * 참석예상 규모: 1000명 (한국 150명 포함)
- * 법정일정:

	12.7(목)	12.8(금)	12.9(토)	12.10(일)	12.11(월)
	전야제	과거의 날	현재의 날	미래의 날 : 평화와 화해	
오전 9:00 -12:00		【1차회기】 “군 위안부 제도의 성립 과 강제연행”	【3차회기】 “폐전과 그 이 후: 할머니들 의 침묵”	휴정 (판결문작성) 【Action Plan】	【국제 심포지 엄】 “무력갈등하의 성폭력”
오후 2:00 -6:00	【개막행사】 (문화행사)	【2차회기】 “위안소의 삶”	【4차회기】 “군 위안부 문 제 제기 이후”	【판결문낭독】 【행동계획 공표】 【폐막행사】	심포지엄 계속
비고		하루일정 7시 간			

〈별첨자료 (3)〉

일본측 제안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헌장(안)

Women's Caucus for Gender Justice에 의한 VAWW-NET Japan을 위한 수정안

전문(제안)

제2차 대전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전쟁과 내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2차 대전의 많은 피해자, 생존자, 특히 성폭력 범죄의 여성 피해자가, 정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판제도는, 국내 재판제도도 국제 재판제도도, 여성에 대해 자행된 범죄의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도 못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은, 공적인 입장에 있지 않은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정부와 군대와 동료가, 세계적으로 받아 들여진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룰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받아야 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도덕적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해국(일본)의 복수의 조직,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국가들(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북한)의 조직, 그리고 저명한 전문가와 인권 운동가로 구성되는 국제자문위원회는, 이에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하 「법정」)을 설치합니다. (만일 이 문서를 「협정」으로 한다면, 합의를 교환하는 각 주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법정」이, 제2차 대전 중에 일본제국군이 설치한 「위안소」에서 고통받은 전 「위안부」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전 「위안부」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많은 피해여성이, 자신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죄를 인정하는 말이나 사죄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법정」국제실행위원회는, 세계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도록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거듭 밝힙니다.

「법정」은 어떠한 국가의 권위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판결을 실행할 권력도 없습니다만, 판결을 널리 알리는 도덕적 책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1조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설치

국제실행위원회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법정」)을 2000년 12월, 토오쿄오(東京)에 설치합니다. 「법정」은 공개재판을 행하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특히 제2차 대전전·대전중에 일본제국군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그 책임자를 소추합니다.

제2조

「법정」의 범위(한계?) (대상?)

「법정」은, 국제인도법에 기초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재판합니다. 이것은 강간, 성노예 행사(「성노예」라고 하면 「제도」에 한정되는 듯이 들리기 때문에),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화, 기타 그 자체가 성폭력인 것이나 성폭력에 관련되는 것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하며, 인도에 대한 죄나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법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법정」은 이 헌장/규정/협정에 기초하여, 자연인, 법인 및 국가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국가원수, 군의 사령관과 책임있는 정부직원 등, 사람위 공적 입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형사책임

1. 이 헌장의 제2조가 서술하는 것과 같은 범죄 중 어느 것인가를 계획하고, 선동하고, 명령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 계획·준비·실행을 어떤 형태로든 방조 또는 교사한 자는, 각각 그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2. 제2조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각각 그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3. 공적인 입장에 있었던 자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완화된 처벌?mitigate punishment를 면할 수도 없습니다. 상사나 사령관은, 아래의 경우 부하가 범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있습니다.

a. 그 상사나 사령관이, 부하가 그와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혹은 이미 행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아야 할 사정이 있고, 게다가

b. 그 상사가 방지를 위해 또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필요에서 적절한 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

4. 범죄가 상사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도,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국가의 책임

1. 자국의 군대가 이 헌장 제2조에 서술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국의 군대를 통제할 수 없었던 국가는,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인간을 지킨다고 하는 국제적 책무의 심각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2. 아래의 내용이 증명되면, 국가는 나아가 그 과실negligence에 대한 책임도 추궁당합니다.

a. 그 국가가, 상기의 범죄에 관한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시킨 경우,

b. 그러한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소추·처벌하지 않은 경우,

c. 피해자에게 보상을 행하지 않은 경우, 및

d. 고의이든 아니든, 문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재판의 지역적·시간적 대상

1. 「법정」의 재판의 지역적 대상은, 일본제국군에 의해 점령된 모든 국가와 지역, 또 주민이 피해를 받은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합니다.

2. 「법정」의 재판의 시간적 대상은, 1939년부터, 그 범죄의 영향이 인정되는 한 현

재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시효의 부적용

「법정」의 재판의 대상인 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법정」의 구성

1. 「법정」은, 인권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학자나 운동가로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재판관, 검찰관 등 「법정」의 담당관officials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국제실행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담당관을 임명합니다.
 - a. 여성의 인권의 정책 제언, 옹호나 추진에 대한 공헌
 - b. 국제형법, 국제인도법, 인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 c. 젠더 밸런스
 - d. 젠더나 성폭력의 범죄를 다룬 경험

제9조

절차

1. 「법정」의 담당관은, 범죄의 증거의 음미에 책임을 지며, 이 현장에 기초하는 범죄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소추의 절차를 개시합니다.
2. 절차의 개시는, 개인, 생존자, NGO 등 관심있는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행합니다.
3. 증거의 음미는, 젠더나 문화의 제문제, 또 피해자가 직면하는 트라우마의 문제에 충분한 배려를 기울이면서 행합니다.

제10조

서기국

국제실행위원회가 서기국으로서 기능하며, 「법정」의 사무와 원활한 실행에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법정」은 아래와 같은 것을 증거로서 접수합니다.

- a. 공문서, 선서공술서, 서명이 있는 진술서, 일기, 편지나 메모 기타 문서자료, 감정서, 사진 등의 영상시각자료
- b. 피해자, 목격자의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증언, 전문가에 의한 감정증언
- c. 관련된 기타의 물증

제12조

공판절차의 개시와 진행

1. 「법정」은 준비를 1년전부터 개시하며, 각 사례나 증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음미를 시작합니다.
2. (검찰관은 각 사례의 증거를 요약하여, 2000년 12월의 「법정」에의 제출에 대비합니다.
3. (증언을 듣는) 증거조사의 절차는 공개로 행합니다.
4. 「법정」의 작업에 이용하는 공통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통역을 합니다.

제13조

피해자와 증인의 참가와 보호

1. 「법정」은, 피해자, 증인 등 증언을 행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보호의 수단에는, 영상만에 의한 절차 등, 필요한 한 피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보호수단이 포함됩니다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정」은, 취급하는 범죄의 본질을 고려하고, 피해자, 증인, 성폭력의 생존자의 안전, 신체적·심리적 복리, 존엄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합니다.

제14조

판결

1. 「법정」은, 헌장 제2조가 서술하는 범죄 중 어느 것에 대해서 유죄라고 인정한 자에 대해, 판결을 언도합니다.

2. 판결은, 「법정」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공개된 장에서 언도됩니다. 판결에는 또 의견과 그 증거가 붙여집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권고 등도 포함됩니다.

3. 판결문의 사본은 공개하고, 역사적 자료로서 널리 배포합니다.

(김창록 교수 번역)

〈별첨자료 <4>〉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예산안(수정안)

〈 수입 예상규모 : 총 2억 4000만원 〉

1. 해외지원

- 미연합감리교회 (UMC)
- 외국여성재단 (Global Women's Fund 등)

2. 국내재단

- 대우학술재단, - 학술진흥재단 등

3. 국내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4. 국내모금

- 전국민 캠페인
- 후원회원
- 국무총리

〈 지출 예상규모 : 총 2억 4000만원 〉

1. 2000년 본 법정 후원금: 1억2천만원 (10만불)

- 총규모 40만불 (일본 20만불, 필리핀 10만불, 한국 10만불)

2. 한국위원회 사업비: 1억2천만원

1) 연구조사비: 1000만원

- 해외현지조사 700만원
- 연구지원비 300만원

2) 행사비: 2300만원

- 학생법정 지원금 500만원, 사전 심포지엄비 500만원
- 대국민 캠페인 및 모금 경비 500만원
- 법정 참가 지원비 800만원 (20명×40만원, 항공료 일부지원, 할머니 등)

3) 한국자료집 출간비: 5,000만원

- 한글판 6권 인쇄비 2400만원 (6권×400만원)
- 영문판 1권 출판비 850만원 (1권×400만원, 영역비 A4 300page×15000원)
- 법정자료 영역비 300만원 (A4 200page×15000원)
- 원고료 1,450만원 (필자 약 50명에게 1편당 20만원의 원고료)

4) 진행비: 1000만원

- 한국위원회 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비 등 사무비 200만원
- 국제회의비 500만원 (국제실행위원회 참가보조비)
- 자료, 홍보비 300만원 (포스터, 브러셔, 자료집 등)

5) 인건비 2000만원 (2명×15개월×650,000원)

6) 예비비 7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별첨자료 (5)〉 한국위원회 자료집 기획안 확정(안)

법률위원회 자료집 기획안

행정
아산 *
서남 *
대우
반수 - 24
m

1. 기획의 개요

「2000년 법정」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총정리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실체를 규명하고, 그 법적 해결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

2. 기획의 내용

아래의 주요 주제에 관해 법률분과위원이 각각 한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책으로 묶기로 함. 단 기존의 법률분과위원으로 전부를 커버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집필자를 모색하며 동시에 그 사람을 법률분과위원으로 위촉함.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 규명

1. 일제 및 일제 강점의 법적 실체 김창록
2. 인도에 반한 죄와 군 '위안부' 문제 조시현, 이장희
3. 전쟁 범죄와 군 '위안부' 문제 김명기
4. 강제 노동 조약과 군 '위안부' 문제
5. 여성 인권의 시각에서 본 군 위안부 문제 -무력 충돌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등
6. 국제법상의 중대한 인권 침해로서의 군 '위안부' 문제 박원순(완성)

II. 각국의 제 2차 세계대전 청산 노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 단계

1. 국제 전범 재판과 군 위안부 문제- 도쿄 재판을 중심으로
- 동경재판과 뉘른버그 재판에서 지휘자 책임문제 (comander responsibility)
2. 각국의 전범 재판과 군 위안부 문제- 바타비아 재판 등 지기영
3. 독일의 전쟁 청산의 실재: 전범 재판과 배상입법..... 박원순(진행중)
- 독일의 나치전범 추적을 통한 전쟁청산..... 박원순(완성), 최봉태
4. 미국: 외국인 불법 행위 청구권법 (Alien Torts Claims Acts), 고문피해자보호법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과 전범의 출입국 규제 등 최근의 입법 움직임 박찬운
5. 유엔 인권 보장체제와 군 '위안부' 문제 (1.5와 1.6 참고)
6. 한일간의 법적 과거 청산과 군 '위안부' 문제
7. 일본의 실제: 위안부 소송과 일본 국회 및 시민 단체의 보상입법운동
8. 한국의 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내입법

III.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

1. 정치적 해결방안
2. 법적 해결방안(국제법적, 국내법적으로 나누어)

재자 선정
홍영진

〈한글 자료집 기획안 진행상황〉

기획홍보위원회 자료집 기획안(정대협 운동사 편)

1. 기획의 개요

지난 10년간의 정대협 운동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간의 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을 짚는데 있다.

2. 기획의 내용

아래의 주제별로 집필자를 선정하여 집필하되, 자료와 시각의 공유를 위해 정대협 실행위원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구성의 틀을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집필 후 반드시 원고를 거쳐 출판하기로 한다.

I. 국내운동 편:

1. 한국여성운동과 위안부 문제(민주화운동, 성폭력추방운동 등)
2. 대 한국정부에 대한 운동(법률제정, 정책변화 등)
3. 대 일본정부에 대한 운동(아시아국민기금, 일본의 정책 등)
4. 대 국민홍보(모금, 수요시위 등)
5. 피해자의식성장(복지활동, 의식의 변화 등)
6. 문화운동(연극, 무용, 미술, 조각, 시, 소설, 영화 등)

II. 아시아연대운동 편: 일본시민운동과의 연대

7. 아시아 피해국과 연대(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III. 남북연대운동: 민족운동으로서의 위안부 운동

8. 북한과의 연대활동

IV. 국제운동 편:

9. 국제인권기구 운동
10. 국제노동기구 운동
11. 국제연대 활동(외국 강연, 증언, 논문, 외국 결의안 등)

〈한국측 자료집 기획안 진행일정〉

1. 한글로 출판하되, 영어 출판도 한다.
2. 내년 10월 한국 심포지엄 시 출판을 한다.
3. 위안부 운동 10년간의 연구를 총집대성하여 관련 분야의 최근 자료와 동향을 중심으로 발전된 연구물을 낸다.
4. 각계의 다양한 필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한다.
5. 각 권당 300페이지 분량으로 하며(신국판), 각 원고는 원고지 70페이지-100페이지 정도로 한다.
6. 필자가 영어와 한글로 집필이 가능하다면, 두가지의 글을 받는 것으로 한다.
7. 99.10 기획안 완성, 99.11 필자 선정 및 청탁, 2000.5 원고수거, 2000.7 출판사